보 은 군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선람	기 관 의 장

제1006호 2020년 10월 16일(금)

【입법예고】

보은군공고 제2020-1225호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 2

- 안 내 문 -

□ 군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되오니 군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전자군보 확인 방법
⇒ 보은군 홈페이지(www.boeun.go.kr) → 군정소식 → 전자군보

회 람									

발행 : 보은군청 편집 : 기획감사실 (☏ 540-3039 행정 3039)

입법예고문

보은군공고 제2020-1225호

『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『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
보 은 군 수

□ 개정이유

○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자 확대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○ “고령운전자”의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하향(안 제2조제2호)

□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6일까지 보은군수(참고 : 민원과장)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【연락전화 : 043-540-3095, 이메일 : bigstar0102@korea.kr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보은군조례 제 호

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만75세 이상의”를 “만 70세 이상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만 70세 이상인 ----------.

【관련법령】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[시행 2020. 6. 9] [법률 제17453호, 2020. 6. 9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 <개정 2012. 6. 1.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통약자(交通弱者)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 6. 1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. 14., 2016. 3. 29.>
1. "교통약자"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【현행조례】

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(제정) 2019.09.10 조례 제258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운전면허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.
2.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보은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)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보은군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카드 제작 형식 등은 군수가 정한다.

제5조(교통안전 교육)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)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제작 형식 등은 군수가 정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조례 제2588호, 2019. 9. 10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